

#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9. 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 안 이 유

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, 순세계잉여금등의 조정과 시책추진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## 2. 주 요 골 자

가.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,17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,01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,877백만원이 증가한 85,639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135백만원이 증가한 7,531백만원임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7백만원, 세외수입 6,520백만원, 지방교부세 381백만원, 지방양여금 131백만원, 국도비보조금이 2,83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5백만원이 감소하였고, 도비보조금 270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2,136백만원, 사업예산 7,148백만원, 채무상환 2백만원, 예비비등 591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,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백만원, 사업예산 199백만원, 예비비등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, 채무상환은 79백만원 감소하였음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1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6조

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다만,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